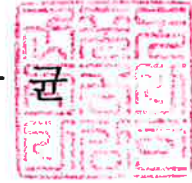
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 균



2023년 3월 28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09 호

## 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직무대행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직무대행) 사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경영시설본부장, 도시교통본부장, 미래기획부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소 관 부 서 | 미 래 기 획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|
| 입<br>안  | 직 위<br>성 명<br>미 래 기 획 부 장<br>한 대 회              |
| 안       | 직 위<br>성 명<br>혁 신 기 획 팀 장<br>성 용 현              |
| 자       | 담당자 성명<br>(전 화)<br>김 양 수<br>( 3 9 0 - 7 6 1 4 ) |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제7조(직무대행)</p> <p><u>사장 유고시에는 경영시설본부장, 도시교통본부장, 미래기획부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| <p>제7조(직무대행)</p> <p><u>사장 유고시 직무대행은 경영시설본부장, 도시교통본부장, 미래기획부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.</u></p> |